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55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서삼석·조인철·임호선

이기헌 · 염태영 · 이용선

박수현 • 안도걸 • 윤준병

전재수 · 신정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병원선은 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비 등 병원선 운영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면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운영 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등) ①
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	
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	
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	
우 제1호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	
고, <u>제2호</u> 는 2025년 12월 31일	<u>제2호 및 제3호</u>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	
다.	<u>.</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

	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
	원선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
② ~ ② (생 략)	② ~ ② (현행과 같음)